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집행위탁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위반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위탁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원주소방서장



- 공 고 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집행위탁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관련법규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공고기간 : 2026. 10. 7.(화) ~ 2026. 10. 23.(금)(16일간)
- 공고대상

이름	송달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박*규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길 5*, 1**동 **6호	지위승계 신고태만	폐문부재 (2회)	3,500,000원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뒷길 8, ***하우스 **3호				

4. 공고내역

- 가. 공고 대상자는 2026. 11. 23.(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033-769-1427)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이 최대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에 의한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상기 공고기간 종료 시 본 서류가 송달대상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강원소방본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33-769-1427, Fax.033-769-1409